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관계

지식재산권 행사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규제 가능

공정거래법 주요 규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항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4항: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5항: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항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지대 (Safety Zone)

9

■ 안전지대(Safety Zone)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
-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심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의미 X
-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라 하여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의미 X

■ 안전지대의 적용

- 거래거절,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X, 사업활동방해 X**)
- 당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합계가) 10% 미만인 경우,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 (합계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I. 행정처분

시정조치(법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 당해 행위의 중지
- 계약 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

과징금(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 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

2. 형사책임

벌칙(제66조 내지 제69조)

각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

양벌규정(제70조)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민사책임

손해배상책임

- 법 제56조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민법 제750조 :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단,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거래상의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원칙 유효설 등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00. 8. 3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호

제정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61호

개정 2010. 3.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0호

개정 2013. 3.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2호

I. 총 칙

1. 목 적

공정거래법 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촉진

2. 적용 범위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행사

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결의나 그 밖의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

II. 일반적 심사 원칙

1.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함.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

2. 기본 원칙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공정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됨.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함.** 단,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는 관련 규정별 위법성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함.

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함.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공정거래저해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단,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최저가격유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위법한 것으로 봄.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위계(偽計)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판단 시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가. 관련 시장 확정

나. 공정거래저해효과 분석

다.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III. 구체적 판단 기준

1. 실시허락 일반

가. 실시허락의 대가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의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실시료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 (4)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특허권 소멸이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 (6) 실시료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시 1 > 실시료의 차별적 부과 행위

갑(甲)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이다. 갑은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통해 실시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에 사용되는 모뎀칩을 직접 제조·판매 한다. 갑의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은 통신산업 관련 협회에서 기술표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갑은 표준 선정 당시 해당 기술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갑의 기술을 이용하는 휴대폰이 널리 이용되었으며, 갑은 디지털 이동통신 관련 기술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갑은 모뎀칩 시장에 신규 진입 사업자가 등장하자 자사의 모뎀칩 이용 여부에 따라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의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표준으로 선정된 갑의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 실시가 필요했던 휴대폰 제조업자 을(乙) 등은 갑이 제공하는 실시료 할인을 받기 위해 자체 모뎀칩을 개발하거나 갑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모뎀칩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였다. 결국 갑은 디지털 이동 통신 기술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모뎀칩 시장에서의 지위 또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갑의 행위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어 관련 업계에 유력한 기술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 갑이 기술표준 선정당시 실시료의 비차별적 부과를 약속한 점,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점, 관련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등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나. 실시허락의 거절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특히 거래거절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실시허락이 거절된 기술이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해당 기술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표준과 같이 관련 시장에서 해당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 자신이 해당 기술을 실시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여 관련 기술의 이용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 (3) 특허권자가 부과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등 다른 부당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다. 실시범위의 제한

다음과 같이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실시허락과 연관된 상품(이하 “계약상품”) 또는 기술(이하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거래수량, 거래지역, 그 밖의 거래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 (2)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관련 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된 실시수량, 지역, 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라. 실시허락 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실시허락 시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조건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 계약상품 가격의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참고] 계약상품 **재판매시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2)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설비 등을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단, 계약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원재료 등의 구매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3) 계약상품의 판매상대방 제한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계약상품을 판매(재판매)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판매(재판매)할 수 없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

[참고] 단,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합리적 범위에서 계약상품의 종류나 실시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실시허락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약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4)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의 거래 제한

부당하게 **계약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상품이나 계약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참고] 단, 경쟁상품 또는 경쟁기술을 함께 거래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영업비밀이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누설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특허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5) 끼워팔기

부당하게 해당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6) 부쟁의무 부과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참고] 단, 해당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특허 관련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7) 기술개량과 연구 활동의 제한

(가)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개량,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나)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참고] 단, 계약기술 등과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이룩한 성과를 특허권자가 상호 대등한 조건으로 교환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의 성능 보증이나 특허권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개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8) 권리 소멸 후 이용 제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9) 계약해지 또는 분쟁 시의 규정

(가) 계약해지 또는 분쟁에 대한 중재규칙, 중재기관, 적용법률 등을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리하게 규정하는 행위

(나) 실시료 지급불능 이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예시 2 > 특허와 무관한 계약 체결의 강요

갑(甲)은 분수설치 공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이다. 갑의 특허기술은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분수공사 입찰에서 '필수 이용 기술'로 지정될 만큼 동종업계의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자신의 특허기술이 지방자치단체 A에서 발주한 분수공사 입찰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분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 을(乙) 등에게 특허기술의 실시를 허락하는 대신 낙찰 받은 전체 공사 계약(특허기술을 이용한 공사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부대시설의 공사 또한 포함)금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신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분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갑이 요구한 조건 하에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낙찰 받은 사업자 을은 갑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와는 무관한 부대공사 계약의 도급을 강요한 갑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허소송의 남용 및 부당한 합의 규제

4. 특허소송의 남용

특히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 등)을 특허권자가 인지한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남용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소송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특허권자가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님.

5. 특허분쟁과정의 부당한 합의

-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등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데 합의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합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합의의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관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임을 합의 당사자가 인지한 경우 또는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특허분쟁과정의 합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큼.

예시 - 특허무효심판 취하 합의

< 예시 4 > 특허무효심판 취하와 시장진입 지연에 대한 합의

갑(甲)은 A약의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이며 을(乙)은 A약과 성분 등이 유사한 복제약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을은 갑의 해당 특허가 기존에 공지된 기술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갑은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하고 해당 특허권 만료 후 1년까지 A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을에게 합의를 요청했다. 해당 **대가는 을이 A약보다 저렴한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보다 큰 상당한 금액**인 바, 을은 갑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까지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합의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갑이 특허분쟁과정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보다 현저히 큰 금액의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동 합의 목적은 단순히 소송에 따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복제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나아가 갑이 지급한 막대한 대가는 A약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